

중앙보훈병원 전문의(3개과) 채용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채용관련 문의 :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 인사과(02-2225-4627)

1. 채용인원

채용분야	직종	채용인원	배치부서
순환기내과	전문의	1명	· 제1진료본부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1명	· 제1진료본부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1명	· 제1진료본부 혈액종양내과
계		3명	

2. 운영형태

구 분	고용형태	운영형태
순환기내과	계약직	· 계약기간 : 입사일 ~ '24. 2. 28. ※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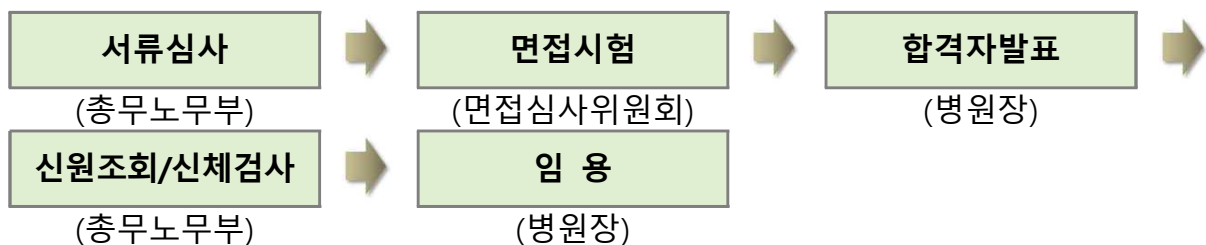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순환기내과	· (필수)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예정)자 · (필수) 순환기내과 전임의 과정 1년 이상 수료자 · (우대) 심초음파 인증의 취득(예정)자 · (우대) 전임의 과정 수료 후 내과 수련병원 근무경력자 및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소화기내과	[취·담도파트] · (필수)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소화기내과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 · (필수) 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예정)자 · (필수)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예정)자 · (필수·우대) ERCP 가능자 · (우대) 초음파·담도내시경 가능자
혈액종양내과	· (필수)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취득(예정)자
공통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접수	'22.12.1(목)~12.21(수)11시	· 공단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등
서류심사 결과 발표	12.22(목) 예정	·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면접시험	12.29(목) 예정	· 면접심사위원회
최종합격자 발표	'23.1.2(월) 예정	· 면접 100% (가점 10%)

○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역량면접 진행)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채용 점수 산정방법)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장애인)	계
자격심사	100점	10점(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최대 1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만점의 10%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3. 1. 2.(월) 예정,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운영

- 채용직무 결원 발생 시 성적순 채용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순환기내과	- (필수) 분과전문의 자격증 - (필수) 전임의 경력증명서 - (해당자) 심초음파 인정의 자격증 - (해당자) 지도전문의 교육 수료증
소화기내과	- (필수) 분과전문의 자격증, 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증 - (필수) 전임의 경력증명서
혈액종양내과	- (필수) 분과전문의 자격증 - (해당자) 경력증명서
공 통	- (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양식) - (필수)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 시 사진, 성별, 생년월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평가 불가로 반드시 접수 기일 내 제출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함.

※ 증명서류는 응시자격,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6.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21.(수) 11시

○ 서류접수처 : 이메일(yse@bohun.or.kr)

7.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 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2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 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 (02-2225-4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붙임자료 (인사규정 제18조)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022. 12.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eoul.bohun.or.kr>)